[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-0013호]

# 2025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(사후관리) 도입기업 모집 공고

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「2025년도 제조 DX멘토단 활용지원(사후관리)」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2월 07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

#### 1. 사업개요

#### □ 사업목적

○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교체, 업그레이드 등 운영 애로 사항 해결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

#### < 2025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(사후관리) 사업 >

구분	지원기간	지원규모	지원한도	지원비중	접수	평가 선정
사후관리	4개월	250개사 내외	최대 1,900만원	50%	'25.2월~3월	'25.4월~6월

# □ 신청 자격

- 국내 제조기업 중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
  -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은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
    - \* 종된 사업장의 경우,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요 (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)

## □ 지원 제외 사항

ㅇ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..... < 부적격 사항 > ....

▷ 휴·폐업중인 기업

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
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

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
▷ 개별 사업공고에서 '신청제한' 또는 '지원제외'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

#### □ 유의사항

- ㅇ 동 사업은 각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함
- '스마트제조혁신 촉진사업' 관련 타 사업(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등)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따라 협약중지 또는 해약 될 수 있음
-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공고문 등을 미숙지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(기업)에 있음

# 2. 세부내용

# □ 지원대상

- ①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동 사업의 공고 시작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 중소·중견 제조기업 또는 '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 (기초)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·중견 제조기업
- ② 기업 자체역량(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 미참여)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·중견 제조기업\*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\*\* 보유 기업
  - \* 공급기업으로부터 유·무상 하자보수를 받지 않은 기업(단, 하자보수 중이라도 지원 내용이 유지보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)
  - \*\*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확인서발급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

## □ 지원 내용

지원유형	지원내용			
	■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(부품 등) 및 SW(솔루션 등)의 고장· 결함에 대한 신속한 AS			
	■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, 공정 개선, 생산 효율성 개선,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			
사후 관리	* (SW 업그레이드)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솔루션 버전업, 모듈 추가, 기능추가 지원 ** (HW 업그레이드) 기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범위에 해당하는 HW 중 부품의 고장· 결함수리, 기능 개조 지원 (단, 부품이 아닌 단독 설비 개체는 지원 불가)			
	■ 역량강화 교육, 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법 전수, 기능개선 등 활용도 제고			

※ <sup>③</sup>공급기업과 기 체결한 유·무상 하자보수 계약 내용, <sup>②</sup>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과의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, <sup>③</sup>사업내용 검토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항목은 지원불가

#### <지원 부적정 항목(예시)>

- 1) 스마트공장 구축 범위와 무관한 내용 (예시 : 스마트공장과 무관한 프린터·스케너 등 개별 전신장비 업그레이드, 사용자 PC 모니터 교체 등)
- 2) 임대 사용료, 기간이 정해진 라이센스형 소프트웨어 비용 (예시: 클라우드 서버 및 인터넷 이용료, 기간 단위 사용 보안프로그램 MG 오피스 등 일반 업무 SW 등)
- 3) 기타 검토를 통해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(예시:계측기가 부착된 생산설비 윤활유 교체(주기적 활동) 등 자체 투자가 적합한 항목 등)

# □ 지원 범위

-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HW, SW 및 솔루션 (MES, ERP, PLM 등)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
- 기업 자체역량(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 미참여)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도입한 솔루션(MES, ERP, PLM등)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, SW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
- 스마트공장 사용법 전수, 기능개선 등 활용률 제고 분야는 아래
   지원내용 중 선택하여 수행

지원항목	지원내용		
프로그램 수정·개선	◆ 수정 프로그램 업무분석 및 설계 ◆ 수정 프로그램 개발 ◆ 공정 코드 추가 및 에러 수정 ◆ 화면 UI 수정		
시스템 유지관리	◆ 공정 개선, 생산품목·원자재 변경,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대응 지원 등 ◆ 공정, 생산장비, 원자재 등에서 발생한 제조데이터의 원활한 수집(센서, 데이터 수집장치 설치 등)과 분석·활용 지원		
데이터 관리	<ul> <li>◆백업 및 문제 발생 시 복구 지원</li> <li>◆ 입력 오류 데이터 검증 및 수정 작업 지원</li> <li>◆ 대량 데이터 일괄 입력(품목정보, 공정정보, 단가, 입출고 정보 등)</li> <li>◆ DB 최적화</li> </ul>		
사용자 운영 지원	◆시스템 운영 애로 해결 지원 ◆사용자 교육 지원 ◆각종 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 지원 ◆단말기, 스캐너, 바코드 등 HW 사용 에러 해결 및 수리 지원		
기타	◆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에 필요한 사항(요건검토 결과에 따라 진행 여부 결정)		

# □ 지원규모 및 조건

- **(지원규모)** 250개사\* 내외
  - \* 상기 지원규모는 '25년 전체 지원과제 수로, 지역별 지원과제 수는 접수 마감 후 지역별 접수현황을 고려하여 확정 예정
- **(지원조건)** 총 사업비의 50% 지원

			사업비(분담비율)		
구 분	지원방법	지원기간	정부지원	<b>민간부담</b> (VAT미포함)	
사후관리	총 사업비의 50%	4개월 <sup>*</sup> (연장 2개월)	최대 19백만원 (50%)	최대 19백만원 (50%)	

\*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, 최대 6개월 초과 불가

# □ 신청기간

○ 2025년 2월 7일 (금) ~ 3월 31일 (월) 17:00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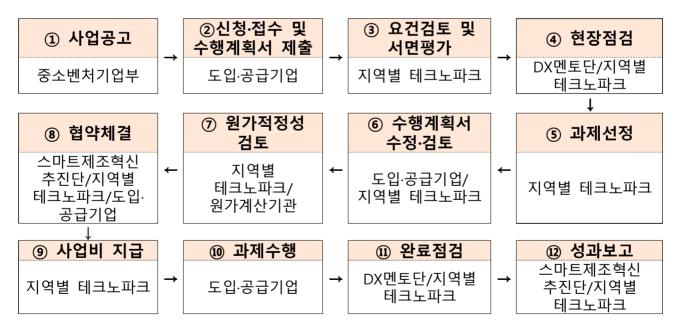
## □ 신청방법

-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을 통해 온라인 신청
  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 → 사업안내 → 사업공고 → 사후관리 지원사업 → 사업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)

구분	온라인 제출 서류			
1	제조DX멘토단 활용 사후관리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* 가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			
2	사업자등록증명원			
3	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			
4	개인(신용) 및 기업(신용) 정보 수집・이용・제공・조회 동의서			
5	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* 발급번호(신청서에 기재) * 재무제표 미보유 기업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번호 기재			
6	정부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: 사업 완료보고서 기업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: 수준확인서, 상세 구축 내역(SW, HW 등) 지자체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: 사업 완료 확인서 및 사업 완료 보고서 등			

<sup>\*</sup> 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

#### □ 지원절차



- ※ ③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: 기업 요건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(지역별 모집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생략 및 현장평가로 대체될수 있음)
- ※ ④ 현장점검 : 외부전문가 1인(필요시 제조혁신센터에서 간사 참여 가능)이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(서면평가 생략시 현장평가)
- ※ ⑦ 원가적정성 검토 : 원가적정성 검토 결과 수행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수정 수행계 획서 제출 필수

# □ 평가항목

(서면평가) 대상 적합성, 지원 적정성, 스마트공장 관리 및 활용 역량,
 지원성과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후보대상으로 선정

# ○ 가점항목

연번	세부내용		
1	○지역 구축사업모빌리티 의장전장 부품산업/스마트홈 부품 산업/생체의료 소재부품산업) 관련기업	1점	
2	○지역 청년 채용(예정)기업(채용예정 확인서 혹은 재직증명서)	1점	
3	○ 지역성장사다리 사업 참여기업(사업 참여 확인서)	1점	
4	○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업	1점	
5	○ Pre 및 명품강소 지정기업(신청일 기준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업)	1점	

# 【사후관리지원 평가항목】

		평가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다소 미흡				
구분	평 가 항 목			미흡		
사후관리 지원 대상 적합성	○(사업참여)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보급· 확산사업 또는 지자체 기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지원설비 및 연속성을 가진 부속 부품인지 여부			(0.1.)		
	○(자체구축) 자체 구축기업은 AS 요청사항이 도입한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, SW, 솔루션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인지 여부	(○/×)				
	○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와 관련성이 있고 사업참여가 적합한지 여부	(○/×)				
사후관리	○ AS 지원 수행기간의 적정성	15	12	9	6	3
지원 적정성	○스마트공장의 사후관리 추진의지 측정	15	12	9	6	3
(40)	○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계획 수립의 구체성 측정	10	8	6	4	2
관리 및	○ 경영진 및 전담인력의 관리·운영 보유 역량	15	12	9	6	3
활용	○데이터 수집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역량	15	12	9	6	3
(45)	○성과지표 설정여부 및 관리·활용 노력	15	12	9	6	3
지원성과 (15)	○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개선 효과	15	12	9	6	3
가점* (5)						
	평가 점수					
(부적합	평가 결과 (부적합 사항이 없으며, 평점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)			□ 적합 □ 부적합		

 (현장점검) 평가위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서면평가 결과 및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 결과의 적정성 및 제출자료의 진위여부 등을 점검하여 최종 지워대상으로 선정

# □ 유의사항

- 전체 지원결정 건에 대해 원가적정성 검토(원가계산) 실시
- 원가검증 결과 산출된 금액이 공급기업 견적 대비 낮을 경우, 낮은 금액으로 사업비 변경 및 협약 진행될 수 있음
-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동일할 수 없음
- 도입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만 사후관리지원 가능
- 교부 보조금의 관리·집행은 관련지침 등에 따라 도입기업의 책임하에 진행하며, 공급기업은 사후관리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부품구입 등 목적 으로 협약 당사자 외 기업과 거래 시 선금 완납을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함
-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, 관련서류
   제출 지연 등으로 인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
- 협약 체결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차년도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

## □ 사업 문의처

지역	기관명	연락처		
광주광역시	광주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62-602-7211		